



# Samil Global Tax Update

May 2017

## 1. 세법 개정사항

중국	특별 세무조사 절차 및 기준과 상호합의 절차에 대한 행정 조치 발행
브라질	비거주자인 주식양도인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의무자 관련 예규 용역의 수입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 및 기타 거래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공표

## 2. 주요 조세 동향 및 법률 개정 예정 내역

캐나다	2017 Budget 발표
영국	EU 탈퇴 절차 개시
러시아	신규투자 지원 방안
호주	2017-2018 예산안 중 호주 부동산 소유주 관련 법안

## 3.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동향

OECD	포괄적인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준비 CbCR관련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이탈리아	CbCR 재정부령 발표
네덜란드	CbCR 법안 의회 제출
벨기에	CbCR 교환에 관한 의정서 승인

## 4. 2017 US Tax reform 관련 Update

미국	2018 예산안 의회 제출
----	----------------



**SAMIL** | 삼일회계법인

This publication is provided for general guidance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formal tax advice. You should consult your tax adviser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ction based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 201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 1 세법 개정사항

### 중국

- 특별 세무조사 절차 및 기준과 상호합의 절차에 대한 행정 조치 발행
- 중국 국가 세무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 "SAT")은 2017년 3월 17일에 특별 세무조사 절차 및 기준과 상호합의 절차 (Mutual Agreement Procedures, "MAP")를 위한 행정 조치(SAT 공고 [2017] No. 6, Public Notice 6)를 발행함. 이 조치에는 위험관리, 세무조사 및 조정, 행정검토, 특별 납세 조정을 위한 MAP 및 기타 관련 이슈에 대한 규정이 포함됨. 공고 6 호는 2017년 5월부터 유효하며, 특별 납세 조정의 집행 조치 (Guoshuifa [2009] No.2, Circular 2) 및 관련 규정을 대체할 예정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국적 기업의 수익 수준 모니터링 강화: Public Notice 6 은 중국 과세관청은 기업의 이익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 납세 조정 모니터링, 조사 및 조정을 통해 기업의 세법 준수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임. 이는 최근 중국과세당국의 위험 수준에 따른 세무조사 추세와 부합함.
- 기업의 자체 위험 평가 및 이에 따른 자발적 조정 장려: Public Notice 6 는 이전가격에 대한 납세자의 자체조정예 관한 종전 규정을 통합함. 다만,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자발적 조정 독려에 따른 자발적 납세결과 이중 과세가 발생시 MAP 을 통해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자발적 조정이 있더라도 중국 과세관청에서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선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특별 세무조사 절차 및 기준 개선:
  - ✓ Public Notice 6 은 특별 세무조사 대상으로 이전가격, 비용분담조정 (cost sharing arrangement),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rule),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ule, "CFC") 분야 등 9 가지 유형을 명시함.
  - ✓ Public Notice 6 은 기능분석의 일부로 사용된 자산에 대한 경제 분석을 위한 특정 위치요인 등과 같은 비교분석에 고려된 요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며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결과를 반영함.
  - ✓ 또한 Public Notice 6 은 특수관계자 지분 이전을 분석하기 위해 비용, 시장, 및 소득 접근법을 통해 다양한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결정 방법을 규정함.
  - ✓ Public Notice 6 은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에 관한 규칙을 제공하고 '무형자산에 의한 소득배분이 상업 활동 및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에 비례해야 한다'는 점, 이어 '경제적 이익과 상응하지 않으며 납세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의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로열티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특별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일반 원칙을 강조함. 특수관계자간 무형자산 사용과 관련되어 수수된 로열티 지급액은 적시에 조정되어야 하며 로열티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지침이 제공될 것이라는 점이 명시됨.

- 특별 세무조정을 위한 MAP 명확화: Public Note 6 은 중국 또는 다른 체약국가에서의 특별 세무 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체약국가와의 조정에 대한 협상에 적용됨. 또한 특별세무조사 결과가 조세조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에는 중국 납세자는 MAP 을 개시할 수 없음.
- 중국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강화함과 더불어 공동 수사 및 검토 절차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전국적인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방지 사례에 대한 과세당국 내 내부 검토 절차를 마련할 예정임. 또한, 과세당국은 조세회피방지 규정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고,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는 빈번해지고 정교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 비거주자인 주식양도인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의무자 관련 예규
- 2017 년 1 월 25 일 브라질 과세당국 (RFB)은 비거주자인 양도인의 주식교환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이슈를 명확히하는 유권해석 88/2017 을 발표함.
- 브라질 세법에 따르면 주식교환 거래는 브라질 법인의 전체 자본금이 다른 브라질 법인의 지분으로 이전되는 거래로서 결과적으로 후자는 이전 법인의 주주가 됨.
- 지난 수년간, 주식 양도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주주에 의한 결정인지가 쟁점이었음.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대상 주식의 주주가 양도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던 반면, 양도대상 법인 스스로가 양도를 결정한 경우가 있었음.

- RFB 가 최근 발행한 Normative Instruction (NI) 1,664 / 2016 에 따르면, 이 거래는 주주 스스로가 주식의 양도를 결정한 것이고, 양수인은 비거주자인 양도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WHT)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 상기 유권해석에 따라, 유권해석 88/2017 에서는 양수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비거주자인 양도인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결정됨을 확인함.
- 이 유권해석은 '법률'과 같은 지위를 보유하지는 않지만 주식교환 거래에 대한 RFB 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음.
- 용역의 수입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 및 기타 거래세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공표
- 2017 년 3 월 22 일, RFB 은 Solução de Consulta 153/2017 를 발간한 바, 이는 용역의 수입시 특정 거래세가 과세되는 시점은 비거주자인 용역의 공급자가 경제적 및 법적으로 해당 용역에 대한 서비스 대가를 받을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임.
- SC 153/2017 에서는 법에 의해 용역의 수입에 부과되는 다양한 세목으로 원천징수세(WHT), Contribution for the Intervention of Economic Domain (CIDE) 및 PIS/COFINS 라 불리는 공적 부조를 열거함. 관련 법에 따르면 상기 세목의 과세시기는 자금의 수수, 신용제공 (credit), 공급, 고용 또는 송금 시점이나, 다만 CIDE 는 역월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기 과세 시기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마지막 날임.

- 종전에는 신용제공 거래로 회계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거래세의 과세시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또는 과세 시기는 실제 지급 및 송금 시점이라는 의견과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지급시기 중 빠른 때라는 의견도 있었음.
- SC 153/2017 은 해당 거래세의 과세시기는 라 RFB 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회계 상 'credit'을 계상할 때가 아니라 대가를 받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확인함. 즉, 브라질 수입업자의 납세의무는 외국 법인이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에 따른 조건에 따라 브라질 법인에 그 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발생함.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 도래).

## 2. 주요 조세 동향 및 법률개정 내역

### 캐나다

- **2017 Budget** 발표
  - 2017 년 3 월 22 일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17 예산안을 발표함.
  - 2017 예산안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 또는 법인 소득세의 증세는 없음. 또한 많은 추측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Anti-hybrid 제안 역시 포함되지 않음.
  - 2017 예산안에서 연방 정부는 BEPS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재 강조함.

### 영국

- **EU 탈퇴 절차 개시**
  -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영국이 2017 년 3 월 29 일 유럽 연합 조약 제 50 조에 따라 EU 탈퇴 절차를 개시하였음을 발표함. 다음날 영국정부는 The Great Repeal Bill White Paper 를 통하여 EU 탈퇴 이후 법령 등의 변화에 대한 제안들을 제시함. 정부는 EU 법의 근간인 EC 법 1972 를 폐지함과 동시에 동 법의 많은 내용들을 영국법률의 틀 내로 인용할 예정임. 이는 영국이 EU 를 탈퇴하더라도 EU 에서의 법률은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되, 영국 의회는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토론을 거친 후 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임.
  - 유럽연합 조약 제 50 조에 의거, 영국과 나머지 27 개 EU 회원국과 EU 기관 (위원회, 의회 및 의회)은 영국의 탈퇴 조건을 협상 할 예정임. 유럽 평의회에서 과반수 득표를 통해 노조에 남아있는 회원 (EU27)은 공식 탈퇴 계약을 승인 해야 함.

- 영국 정부는 2019 년 3 월 29 일 까지 EU 탈퇴 협정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병행할 예정이나 그러나 EU27 이사회 의장은 협상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탈퇴 사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협상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영국 정부는 기업들을 보조하는 정책과 정책 실행 단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2021 년 이후에도 EU 법안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중요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2018 년 가을까지는 그 진전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러시아

- **신규투자 지원 방안**
  - 정부는 도시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제조 및 연구 개발 시설을 개발 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기 위하여 세금, 행정, 토지임대, 및 기반 시설의 구축 등의 포괄적 정책을 채택함.
  - 2015 년 말, 정부는 투자 우선 순위 프로젝트 상태를 가진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규제 프레임 워크를 시작, 투자자에게 전체 세금 부담을 25 %까지 줄일 수 있는 특정 세금 혜택을 제공함.
    - ✓ 법인세: 17%에서 12.5%로 인하
    - ✓ 재산세: 2.2%에서 0%로 면세
    - ✓ 토지세: 0.7% 감세세
  - 또한 상기 신규투자는 당국에 의한 재산 압류 또는 국유화, 토지의 소유권 종결과 같은 비상업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됨.
  - 다음의 투자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

-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생산
- ✓ 유틸리티 서비스, 기구의 생산
- 상기 정책에 따라 이미 33 개의 회사들이 혜택을 얻고 있음. 이들 회사 중에는 산업시설과 테크노파크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고용인원은 약 46 천명으로서 지난 5 년동안 290 억의 루블화를 투자함.

## 호주

- **2017-2018** 예산안 중 호주 부동산 소유주 관련 법안
- 2017-18 년 연방 예산안에서 보여지는 호주 정부의 우선 순위 중 하나는 호주인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 확보임.
- 이 예산안은 호주 내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올 4 월 발표된 호주 내국인 우선고용 정책 (457 비자 폐지안) 등과 이어지는 내국인 우선주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치는 호주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7 년 5 월 9 일 오후 7 시 30 분 (AEST)부터 소급 적용됨
- 호주에 주거지를 두고 있으며 세무상 임시 비거주자인 경우 : 상기 명시된 적용 시점부터 비거주자/임시거주자에 대해 주거지 양도소득세 면세혜택 (Capital gains tax main residence exemption)이 폐지됨. 해당 날짜 이전부터 보유중인 기존 부동산은 2019 년 6 월 30 일까지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이 적용 가능함
- 호주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호주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원천세율은 12.5 %로 증가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 면세자산의 threshold 는 \$750,000 로 감소할 예정임. 호주 정부는 공실이거나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가능한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며 이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적용됨
- 호주 소유의 모든 납세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포함) : 임대 부동산 조사를 위한 여행경비의 손금 산입 적용 배제 및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 발생

### 3. BEPS 관련 동향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최대 화두는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이슈입니다. OECD 및 주요 국가의 BEPS동향은 해외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publication에서는 BEPS와 관련한 OECD, G20, EU 및 주요 국가의 과세당국의 동향에 대한 주요 정보를 별도 섹션으로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 **OECD, 포괄적인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준비**
  - BEPS는 G20 국가들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는 100여개 국가 및 여러 국제기구들(IMF, OECD, UN)이 모여 세제에 대해서 논의하며 이 중 OECD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각 국의 정책변화에 맞춰 일관되고 적시에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국내 정책 동향을 염두 해 두는 것이 중요. 추가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각 국가들은 2015년 9월에 합의된 최소한의 규정을 적용해보고, 다른 권고사항이나 추가적인 BEPS 관련 일에 대해서 시행된 사항을 검토함.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인 시스템이 연관된 만큼 프레임워크 하는 국가들 간의 추가적인 의견상합치는 어려울 것이 예상됨.
  - 이들은 BEPS 이외에도 다양한 조세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 저소득 국가 혹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toolkit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BEPS 플랫폼 구축은 세계적인 성장과 조세 확실성에 대해 기여할 예정.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

이 있음

- 현존하고 있는 OECD 모델 조약과 이전 가격 세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음. 몇 가지의 actions의 경우 CFC와 같은 특정사례에 대한 ‘모범사례’적 접근을 보여줌.
- MLI 중 일부는 국경세 논쟁을 중재하기 위한 선택가능한 새로운 기준을 재정하는데 전념하고 있음.
- OECD는 5개의 branch mismatch arrangements의 경우를 규정하고 해당 경우를 상쇄시키기 위한 예비적 권고를 제정함.
- 현재 60개국 이상의 많은 국가들이 CbCR에 대한 공유에 대해서 합의하고 있는 상황. 이 국가들은 2016년에 프레임워크를 실행하여 2016년 과세 기간에 관련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정함. EU 회원국의 경우 2016년 1월 이후의 과세 기간에 대한 CbCR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 될 것.
- Harmful tax practices (Action 5)은 정권 특혜(preferential regimes)의 경우와 조세 법규 교환(exchange of tax rulings)인 경우 적용해야 함.
- 조약 남용(treaty abuse)에 관한 사항은 폭넓게 적용되고 상호합의절차(MAP)에 대한 최소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 현재는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 이행에 초점이 있지만, 점차 폭넓게 시행될 것으로 보임. 정치적,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BEPS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압박이 강할 것으로 예상됨. 국가에 따라 시행 거부, 지연되거나 혹은 더 폭넓게 받아들이는 등 입장 차가 생길 것으로 보임.



- **OECD, CbCR** 관련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2017.4월 6일 OECD는 Action 13, “이전가격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 문서화”를 시작하기 위한 국가별보고서(CbCR) 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권고사항을 발간함. Action 13은 2016년 6월에 처음 발간되었고, 그 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음. 이번 버전에서의 주된 쟁점은 자산관리업계에서 이전 권고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임.
  - 이번 권고사항은 매출에 대한 정의와 구성단체의 소수지분 처리, 다국적기업(MNE) 그룹의 존재와 구성원을 결정하기 위한 회계 규정 및 관련 당사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수익의 정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임시 수입과 이익은 CbC 보고서의 수익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CbC보고서 신고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에 포함될 수 있음.
  - 주요 지분의 취급; 계열사 (constituent Entity)의 완전연결 (full consolidation)이 나 부분 연결 (partial consolidation)이 필요한 법인의 최종모회사 (Ultimate Parent Entity) 수준에 적용 가능한 회계 규정의 경우이자 특수관계자 아닌 소수 주주들이 있는 회사의 경우, 해당 법인의 수익이 연간 수익 한계(threshold)를 적용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수익을 포함할 것인지, CBCR에 수치 자료를 전부 반영할지 일부만 반영할지를 결정해야 함.
  - MNE의 존재여부 및 구성원의 결정: 최종모회사(UPE)가 공개적으로 거래되는지에 따라 어떠한 회계기준의 연결 규칙을 참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포함됨.
  - 특수관계자의 정의; ‘특수관계자’라는 용어는 CbCR의 표2에 열거된 계열사와 동일함..
- OECD는 CbCR에 대한 지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임. 위에 언급된 대로 투자로 인한 수입은 수익으로 인식되어야 함. 총액법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순액법으로 표시된 수치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음.
- 또한, 투자회사 혹은 투자대상 회사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MNE 그룹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IFRS 회계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
- 4월에 업데이트 된 내용은 주로 자산 관리 산업에서의 정의를 명확히 하거나 관련된 회계 규칙이나 규정을 되짚어 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MNE 그룹의 경우 각 과세 당국과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 개별국가의 정책 권고에 따라서 각각 국가의 규제가 만들어 질 것이라 예상됨.
- 이탈리아 **Country-by-Country Report** 관련 재정부령 발표
  - 이탈리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MoF)는 Country-by-Country Report (CbCR)의 실행을 포함한 2017년 2월 23일 재정부령을 2017년 3월 8일 발표함.
  - 일반적으로 750 백만 Euro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MNE 그룹은 경제, 사업, 조세환경 정보 (예: 수입, 세 전 결과, 수입 세금 납부 액, 종업원 수)에 대한 연간보고서와 MNE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들에서 보고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MNE 그룹의 이탈리아 자회사와 MNE의 최종 모회사가 아래의 국가에 소재한 이탈리아 자회사는 이탈리아 과세당국에 CbCR을 제출하여야 함.



- ✓ CbCR 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강제적 인 정보 공개 동의 자동 교환이 이탈리아와 협약이 되지 않은 나라인 경우
- ✓ 강제로 협약은 맺었으나, 체계적으로 이행이 안되고 정보가 적절하게 이탈리아와 교환이 되지 않는 나라인 경우
- CbCR의 최초 기간은 2016 년 1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로서 2016 과 세연도에 대한 CbCR의 제출기한은 2017 년 12월임.
- 네덜란드 **CbCR** 법안 의회 제출
  -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은 2016 년 5 월 25 일자 Council Directive (EU) 2016/881 의 실행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간 기준에 근거한 MNE의 조세환경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자동 교환하여야 함.
  - 제안된 법안은 Corporate Income Tax Act 1969 및 Act on International Assistance with the Levying of Taxes의 수정을 담고 있음.
  - 다음과 같은 법인세법의 29c, 29d, 29e 및 29h 조항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음.
    - ✓ EU 회원국내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보고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
    - ✓ 다른 회원국이 네덜란드 법인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네덜란드 거주자에 대한 추가 통지 요건.
    - ✓ 통지의 내용 및 형식에 관한 조건,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
  - Act on International Assistance with the Levying of Taxes은 EU 회원국 간 CbCR 자동 교환 기준에 대한 신규 조항이 포함됨. 그 회원국의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보고서, 원칙적으로, 마지막 날로부터 15 개월 이내에 교환 할 필요가 있음.
- 벨기에 **CbCR** 교환에 관한 의정서 승인
  - 2017 년 2 월 24 일 벨기에 각료회의는 CbCR 교환 법안의 예비 초안에 합의함. OECD 와 BEPS의 뼈대를 토대로 2016 년 1 월 27 일 벨기에 각료회의는 프랑스 파리에서 이 협정에 서명함. 이 협정은 협정 내용의 사용 또는 유포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기밀 유지 법안, 상호합의 절차를 포함함.
  - 다음 단계는 승인을 위해 법안 초안이 벨기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 4. 2017 US Tax reform 관련 Update

무역, 이민 등에 있어 보수적 가치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 세제에 대해서도 그 근본 틀을 개혁하는 수준의 획기적인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시, 미국 세법규정 변화는 해외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최근 하원세제개정안(“Blue Print”)을 포함하여 2017년 Tax reform의 주요 예상 변화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Update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2018 예산안 의회 제출

- 2017년 5월 23일 트럼프 행정부는 4조 1천억 달러의 2018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당 예산안에는 향후 10년간 세제 개혁, 규제 완화 및 기간시설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과 대규모의 연방예산 지출 감축 방안이 각각 담겨있음. 이번 예산안에서는 세제 개혁과 기타 정책 변화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3%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의회예산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연간 성장률 1.9%, 블루칩 (Blue Chip) 전망은 2.0%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조한 적자중립적 (Deficit-neutral) 세제개혁”을 표방하고 있음.
- 한편, 지난 4월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혁의 원칙은 세부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당시 발표된 세제 개혁 원칙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 Territory Tax system으로의 전환, Repatriation Toll Tax 시행, 이자비용 관련 세금 우대조치 철회가 포함되었음. 또한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의 축소(7개에서 3개로 축소시키고 각 구간의 세율은 10%, 25%, 35%), 투자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 3.8%의 순투자세 폐지, 표준 공제 증가, 부동산세와 법인 및 개인의 최저한세 폐지도 포함됨.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기타 세제 및 헬스케어 관련 정책의 폐지로 절감된 예산을 바탕으로 3.8%의 순투자세를 폐지할 예정임.
- 5월 24일 CBO는 백안관의 예산안에 대한 지출 예측치를 공식 발표할 계획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헬스케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수정사항을 논의 중임. 또한 백악관과 상원은 2010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를 폐지 및 대체할 법안의 최종본에 합의할 필요가 있음.
- 하원세입위원회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는 5월 18일 세제 개혁과 경제성장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었고, 5월 23일에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공화당 상원에서 준비한 세제 개혁인 Blue Print, 특히 국경 조정세에 중점을 두어 논의될 예정임. 2018 예산안 및 세제 개혁 관련 입법에 앞서 이러한 공청회는 계속 개최될 것으로 보임. 상원재무위원회 구성원들 역시 정부 관료들과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최근 지속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이 연방예산 적자 감축 관련 트럼프 행정부 계획의 중심임을 이번 예산안으로 재확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국 세법의 개혁을 법으로 제정함과 동시에 납세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과세체계를 제공해야 한다는 어려운 정치적 이슈가 있음.

## Contact

이중현, 부대표  
02 709 0598  
[alexlee@samil.com](mailto:alexlee@samil.com)

김주덕, 상무  
02 709 0707  
[michaelkim@samil.com](mailto:michaelkim@samil.com)

이동복, 상무  
02 709 4768  
[dongblee@samil.com](mailto:dongblee@samil.com)

정종만, 상무  
02 709 4767  
[cmchung@samil.com](mailto:cmchung@samil.com)

조창호, 상무  
02 3781 3264  
[changhojo@samil.com](mailto:changhojo@samil.com)

서백영, 상무보  
02 709 0905  
[byseo@samil.com](mailto:byseo@samil.com)

이동열, 상무보  
02 3781 9812  
[dyoullee@samil.com](mailto:dyoullee@samil.com)

김홍현, 이사  
02 709 3320  
[hhkim@samil.com](mailto:hhkim@samil.com)

박인대, 이사  
02 3781 3268  
[idpark@samil.com](mailto:idpark@samil.com)

한규영, 이사  
02 3781 3105  
[kyhan@samil.com](mailto:kyhan@samil.com)

양윤정, 이사  
02 3781 9278  
[yjunyang@samil.com](mailto:yjunyang@samil.com)

염현경, 이사  
02 3781 3193  
[hkyum@samil.com](mailto:hkyum@samil.com)

최정윤, 이사  
02 709 4021  
[jechoi@samil.com](mailto:jechoi@samil.com)

삼일회계법인 글로벌서비스본부는 국제조세전문 컨설팅조직으로서 전문성과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국적기업이 해외신규투자/인수합병/운영/철수 시 직면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